

#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 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편집인 공보실장 최철호  
 인쇄국 국제출판인쇄주식회사

## 차 례

### △조 례..... 13492

- 제 457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 제 458호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회경 조례중 개정
- 제 459호 서울특별시 시범농촌 개발조성사업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
- 제 460호 서울특별시 시범농촌 개발조성사업기금 설치조례중 개정
- 제 461호 서울특별시 립 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
- 제 462호 서울특별시 립 직업보도원 설치조례중 개정
- 제 463호 서울특별시 사관국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
- 제 464호 서울특별시 사관국 관리조례중 개정

### △규 칙..... 13508

- 제 614호 서울특별시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처리규칙 폐지에 관한 규칙
- 제 615호 1966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수 기준규칙중 개정

### △훈 령..... 13509

- 제 225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중업권 인사위원회 규정
- 제 226호 서울특별시 무려가전축물 대책위원회 규정

### △사 령..... 13513

### △고 시..... 13521

- 제 1 호 도로수익과 부담금 부과액 결정.....
- 제 2 호 도로수익과 부담금 부과액 결정.....

( 2 ) 조 례

- 제 3 호 사료성분 등록갱신
- 제 4 호 수도사업장 명칭 및 위치고시
- 제 5 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가 지정
- 제 6 호 사료성분등록

△공 고..... 13524

- 제 1 호 1966년산 추곡수납 제3차 장소별 일자결기
- 제 2 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
- 제 3 호 세목공고
- 제 4 호 세목공고
- 제 5 호 압류물건 동리처분
- 제 6 호 환지처분(서고토지 구획경리 지구)
- 제 7 호 세목공고
- 제 8 호 환지매경지 일구 변경지정
- 제 9 호 세목공고
- 제 10 호 지유재산 매각공고
- 제 11 호 동유우관에 관한 안건공고
- 제 12 호 덕촌 토지구획경리 사업실시
- 제 13 호 왕동 토지구획경리 사업실시
- 제 14 호 화양 토지구획경리 사업실시
- 제 15 호 당우 토지구획경리 사업실시
- 제 16 호 연회 토지구획경리 사업실시
- 제 17 호 세목공고 일부경정
- 제 18 호 녹번시장 개설허가
- 제 19 호 시장개설 적격자모집
- 제 20 호 분담금 납입 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조 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市民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기 1967년 1월 1일

서울特別市長 金 容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57號

서울特別市 市民會館使用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 市民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第1號「市民會館使用料」別表第2號「附屬設備使用料」別表第3號「冷暖房使用料」을 別表와 같이 改正한다

附 則

이 規則은 196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시 민 회 관 사 용 료

구 분	사용일	오 전 (오 후 야 간)			공 공 휴 일			
		오 전	오 후	야 간	공 공	휴 일	휴 일	
내 간 당	평 일	17,000	13,400	46,000	37,400	60,000	75,400	
	보통 휴일	20,000	10,000	51,400	48,000	73,400	88,000	
소 방 당	평 일	2,300	1,700	4,900	6,500	9,000	11,000	
	보통 휴일	2,800	5,500	6,000	7,800	10,500	13,000	
강 당	예석장 1시간 대당 2,400 (냉난방포모임)							
낮중시차 100원(원당)·수중시차 200원(원당)								
별 관	사용일	오 전	오 후	야 간	공 공	휴 일	휴 일	
	평 일	2,400	2,700	2,700	4,000	5,200	4,000	6,600
	보통 휴일	2,700	3,400	2,400	4,300	5,500	4,800	8,000
기 타	예석장 1시간 대당 1,900원(냉난방포모임)							
	1. 영회촬영 3시간당 10,000원 다만 3시간 초과하는 3,000원 이상을 수한다							
	2. 선전영화 가. 10,000원(월 1일-10일이내) 다. 20,000원(월 11일-20일이내) 라. 30,000원(월 21일-30일이내)							

부속설비사용료

종별	품명	단위	사용료	비고
악기	스탠드 피아노(대형)	대	5,000원	조율비별도
	〃 (중형)	〃	2,500원	〃
	피아노(소형)	〃	500원	전일사용
음향장치	세부스터 스피커 마이크	〃	500〃	
	빈테블	〃	500〃	
	빈테블(메코드프리아)	〃	500〃	
	테프렉코드	〃	1,000〃	
	세부스터 테스크 마이크	〃	500〃	
	두진 마이크	〃	1,000〃	
조명장치	포타스포트 0.1KW	〃	125〃	
	포트라이트 1) 〃	열	1,250〃	
	스포트 〃 3 〃	대	750〃	
	〃 〃 2 〃	〃	500〃	
	원색제용 2 〃	〃	500〃	
	〃 1 〃	〃	250〃	
	포트라이트 (색채이용용) 1 〃	〃	250〃	
	마크라이트 에프 트 마실	〃	1,250〃	
	스트립라이트 1: Feet	〃	750〃	
	〃 3 〃	〃	500〃	
	〃 3 〃	〃	250〃	
	조명장치	조트라이트 3 KW	대	500원
〃 1 〃		〃	250원	
반지라이트 2 〃		〃	500원	
전기사용료		KW		

무	연단		매	200	
	회전무대(내)		석	1,500	
	(외)		석	500	
	육실		석	400	
	반향판		석	1,100	
	오케스트라받트		석	1,500	
	회외용탁자		석	200	
	외자		석	50	
	연선용탁자		석	100	
	장	사각형덜 나무 3R×2R	매	100	회의 때 여러 칸짜리 자음으로 본 정수각의 양의간 자음간 의각의 사각형 또는 삼각형 상단 일측의 각을 대칭으로 남일측으로 교정한다.
3×6		석	200		
5×9		석	300		
6×6		석	400		
6×12		석	800		
3×12		석	400		
삼각형덜 나무 3×3		석	100		
3×6		석	100		
6×6		석	200		
6×9		석	300		
무대 내 장 치	무대용계단 3R×2	매	1,100		
	3R×3	석	160		
	3R×4	석	200		
	6R×2	석	300		
	6R×3	석	300		
	6R×4	석	400		
	탈마루다루 4×4×1	석	400		
	4×1	석	20		
4×1.4	석	40			
3×2.1	석	60			

( 6 ) 조 례

영사기	영사기(에르네망)	식	6,000	배강당용
	(실프레스)		1,000	소강당용

병 난 방 사 용 료

병난방료 징수기간 병복은 6월 15일—8월말까지

난복은 11월 15일—3월말까지

시간별 구분	장소구분	배 강 당	소 강 당	별 판
오 전		10,000	1,000	700
오 후		14,000	1,500	1,000
야 간		14,000	1,500	1,000
오 전·오 후		16,000	1,800	1,300
오 후·야 간		18,000	2,000	1,400
전 일		22,000	2,400	1,700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 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기 1967년 1월 18일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58號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 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 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區 名	洞 名	地 番
麻 浦 區	江 橋 洞	47의 2
	江 橋 洞	7의 3
	江 橋 洞	44의 1

을 西大門區 창원동에 編入

區 名	洞 名	地	番	
西 大 門 區	渣 川 洞	65의72	65의71	
	◇	65의70	102의9	
	◇	102의2	102의6	
	◇	102의8	102의10	
	◇	102의11	102의12	
	◇	102의7	65의69	
	◇	65의4	102의2	
	◇	65의83	65의84	
	◇	65의31	65의82	
	◇	102의5	103의4	
	◇	103의6	103의1	
	◇	103의5	101	
	◇	山 7의5	山 7의7	
	◇	山 7의8	山 7의9	
	◇	山 7의10	山 7의11	
麻 浦 區	◇	山 7의12	山 7의13	
	◇	山 7의14	102의14	
	◇	103의3	103의3	
	◇	102의1		
麻 浦 區	西 橋 洞	7의48	7의47	
	◇	7의43	7의40	
	◇	8의10	7의46	
區 名	洞 名	地	番	
麻 浦 區	西	7의49	8의4	7의42
	橋	7의41	7의4	8의12
	洞	8의11중	8의3중	8의14

( 8 ) 조 례

廣 西	8의8	8의9	8의7	
	8의15	8의6	7의8	
	7의38	12의2	12의5	
	12의6	12의1	12의3	
	12의4	10의4	10의6	
	11의6	11의3	11의4	
	11의2	11의1	11의7	
	14의2	10의3	10의3	
	10의8	10의2	10의7	
	10의1	11의7	11의8	
	10의5	67의1	67의4	
	67의5	67의6	67의7	
	68의5	68의15	65의2	
	217의2	217의3	216의2	
前 橋	213의2	213의3	96의3	
	96의2	72의2	74	
	73	65의1	71의1	
	71의2	72의1	64의1	
	77의1	79의1	79의4	
	70의5	79의6	70의2	
	70의4	70의5	71의3	
	71의4	65의1	42의9	
	區 河	42의34	42의25	42의36
		42의37	42의38	42의39
42의40		42의41	42의42	
42의43		42의45	42의46	
42의44		42의51	42의47	
42의50		42의49	42의48	
40의3		40의4	40의5	



麻 浦 區	西 橋 洞	41의1	41의3	42의23
		45의4	45의11	45의13
		45의2	86의3	45의12
		7의39	42의8	42의32
		42의30	42의31	42의3
		42의33		

全 麻浦區 東橋洞에 編入

麻 浦 區	東 橋 洞	32의18중	山 7의1중	122의7중
		39의11중	48의3중	44의48중
		9의13	19의10	山 17의7중
		66의3중		
麻 浦 區	唐 八 洞	11의3	12의6	9의5
		12의7	12의8	18의1
		20의1	21의1	23의11
		19의1	19의4	19의5
		19의6	19의7	19의8
		19의9	19의10	19의11
麻 浦 區	望 遠 洞	82의4	92의3	92의6
		92의5	99의1	100의2
		99의2	96	97
		95	98의1	98의2
		101의2	166의1	167
		174	183의2	182
		186	175	183의1
		181	185	184
		200의1	187	188

(10) 조 비

麻 浦 區	望	99의1	198의1	189의1
	遠	91의1	185의1	190
	洞	130	177	
麻 浦 區	西	8의11중	8의3중	35의9중
		16의1중	36의5중	17의3중
		22의11중	21의5중	22의3중
		11의4중	323의2	323의13
		33의3	208의27	323의11
	橫	33의12	山 3의3	山 3의2
		山 3의5	山 3의4	21의22
		2의16	21의17	37의6
		18의32	68의36	68의30
		18의25	32의12	32의19
洞	17의3	34의13	68의31	
	13의1	17의3	8의3	
	6의11	20의3	21의5	
	12의11	22의3	35의9	
	15의5	61의4		

麻浦區 合并洞에 編入

麻 浦 區	東	54의1	54의3	54의4
		54의5	54의6	54의7
		54의8	54의9	39의7
		39의6	39의5	39의4
	洞	39의9	39의10	39의11중
		50의9	50의7	50의6
		50의11	50의10	50의12
		50의13	50의14	50의15
50의16	50의18	50의17		

廣 濟 區	東 溝 洞	50의8	50의4	49의5
		43의3	41	49
		42의3	48의3중	44의28
		44의46	44의47	44의48중
		44의27	44의43	38의3
		50의8	山 9의48	
廣 濟 區	上	80의18	80의17	80의4
		80의5	80의15	80의2
		80의6	80의3	82의29
		80의16	82의27	82의24
		82의3	82의26	82의28
		82의25	82의2	82의39
		82의23	82의22	82의21
		82의1	80의1	80의19
		80의12	80의13	82의14
		80의11	80의10	80의9
	水 洞	80의8	80의7	81의1
		83의2	83의3	81의1
		80의4	81의2	81의3
		81의4	82의19	82의21
		81의5	82의4	82의11
		82의15	82의16	82의17
		82의13	82의10	82의40
		82의11	82의12	82의37
		82의38	82의13	82의7
		82의9	82의34	82의35
82의35	82의30	82의16		
82의31	82의33	82의1		

(12) 五 河

麻浦區	上水洞	32의52	82의8			
麻	合	46의2	335의5	335의6		
		85의4	285의3	270		
		山 1의20	山 1의4	山 1의22		
		64의31	254의25	254의26		
		54의16	254의15	234의14		
		54의124	254의32	山 1의23		
		69의1	269의21	269의2		
		55의3	255의23	255의10		
		55의14	255의3	255의7		
		69의8	269의3	269의11		
		59의12	299의15	山 1의1		
		69의21	269의22	264의111		
		64의112	264의113	264의114		
		浦	井	5의13	5의2	7의10
7의11	7의9			7의3		
7의1	10의4			8의4		
8의8	8의1			8의2		
7의2	7의3			8의3		
8의5	11의6			10의6		
10의21	10의1			10의2		
區	洞			31의1	31의4	11의9
				10의3	10의23	10의24
				10의25	11의3	9
				11의4	11의7	11의8
				11의9	8의6	8의7
				8의9	11의3	6
				19의2	11의1	11의2
19의3	13의4	21의2				

麻 浦 區	合 井 洞	19의1	10의16	10의15
		10의14	14	12
		13	5의1	15
		16	山 8의1	2의1
		17의1	17의2	1의8
		10의18	10의7	10의19
		10의17	10의20	10의13
		18의1	18의4	18의5
		18의2	18의3	18의6
		18의7	18의8	18의9
		18의10	18의11	18의12
		18의13	18의14	237의1
		237의2	237의5	237의4
		237의3	236의1	236의2
		264의117	264의118	269의17
		269의18	山 8의4	238의1
		238의2	山 7의14	山 7의22
		山 7의15	山 7의16	山 7의17
山 7의18	山 7의19	238		
2	3	4		
1의3	1의2	1의1		
麻 浦 區	密 人 洞	8	9의2	6의1
		6의6	6의8	6의7
		6의4	6의15	6의14
		6의9	6의12	6의10
		6의13	6의11	6의3
		7의1	6의5	7의3
9의1	9의8	9의11		



(14) 조 리

麻浦區	唐人洞	9의4 10	9의6 7의2	9의7 6의2
麻	下	1의5	1의6	1의7
		1의8	1의9	1의10
		1의11	1의20	1의12
浦	水	1의21	1의1	1의13
		1의14	1의15	1의16
		1의17	1의18	1의19
區	洞	1의22	1의4	144의5
		1의2		

문 麻浦區 西橋洞에 編入

麻	西	306	307의1	308
		307의2	308의26	308의4
		308의33	308의28	308의30
		308의29	308의10	308의11
		308의14	308의12	308의15
		308의13	308의16	308의17
浦	橋	308의3	308의7	308의19
		308의18	308의21	308의22
		308의23	308의24	
		285의16	285의17	285의18
區	合	285의21	285의15	285의20
		285의22	285의23	285의24
區	井	285의26	285의27	285의11
		285의12	290	

문 麻浦區 望遠洞에 編入

附 則

이 條例는 公布後 20日이 經過한 後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示範農村開發造成事業基金 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에 關한 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기 1967년 1월 23일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59號

서울特別市 示範農村開發造成事業基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에 關한 條例

1964年 9月 10日 字 서울特別市條例 4932號 서울特別市 示範農村開發造成事業基金特別會計設置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67年 1月 23日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示範農村開發造成事業基金特別會計設置條例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1月 23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0號

서울特別市 示範農村開發造成事業基金設置條例 改正條例

서울特別市 示範農村開發造成事業基金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은 改正 第7條中 「特別會計」를 「一般會計」로 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婦女保護指導所 設置條例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1月 27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1號

서울特別市立婦女保護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立婦女保護指導所 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增한다

第2條의 2 保護指導所에 必要한 分所를 둔다

分所의 名稱과 位置는 다음과 같다

名 稱 서울特別市立 婦女保護指導所 오투류分所

位 置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오투류洞 31番地의 8號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 保護指導所에 所長 分所에 主任과 必要한 公務員을 둔다

前項의 公務員의 種類와 定員은 市長이 따로 이를 定한다

第5條 所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保護指導所 및 分所의 業務를 掌理하고 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主任은 所長의 指導監督을 받아 所務를 處理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立職業輔導院設置條例中 改正條例를 이  
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1月 27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2號

서울特別市立職業輔導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立 三省職業輔導院設置條例」를 「서울特別市立 職業輔導院設置條  
例」로 한다

서울特別市立職業輔導院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서울特別市立厚生施設에서 成長한 年長孤兒를 收容함과 아울러 集團  
難民의 子女를 對象으로 職業技術을 習得시키기 爲하여 서울特別市立職業  
輔導院(以下 職業輔導院이라 한다)를 둔다 다만 私設厚生施設에서 入院을  
希望하는 者는 收容能力이 있는 範圍內에서 審査하여 入院하게 할수 있다

第2條 職業輔導院의 名稱과 位置는 다음과 같다



- 1. 名 稱 서울特別市立三省職業輔導院  
位 置 서울特別市城北區敦岩洞山 48의 75
- 2. 名 稱 서울特別市立九老職業輔導院  
位 置 서울特別市永登浦區九老洞 311番地

第3條 職業輔導院의 輔導科目은 다음과 같다

- 1. 裁縫科                      5. 工藝科
- 2. 木工科                      6. 印刷科
- 3. 프린트科                  7. 洋靴科
- 4. 理髮科                      8. 板金科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法道稅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에 關한 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1月 31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3號

서울特別市法道稅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에 關한 條例

1965年 12月 16日 宇 서울特別市條例 第413號 서울特別市法道稅特別會計設置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法道稅管理條例中 10條를 廢止하고 公布한다

西紀 1967年 1月 31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4號

서울特別市法道稅管理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法道稅管理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會計) 社運敎을 合理의 으로 運營하기 爲하야 서울特別市 一般會計에 社運敎管理計定을 둔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규 칙

서울特別市稅滯納處分에 依한 押受財産處理規則廢止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1月 6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14號

서울特別市稅滯納處分에 依한 押受財産處理規則廢止에 關한 規則 1961年 1月 15日 宇 서울特別市規則第224號 서울特別市稅滯納處分에 依한 押受財産處理規則은 이를 廢止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66年度 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規則中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1月 18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15號

1966年度 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規則中改正規則

1966年度 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1 「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欄中 「택시 增加臺數基準」 「821」를 「1,564」, 1966年度臺數基準 「562」을 「6366」으로 「計」 增加臺數基準 「1691」 (1932)를 2,434 (2,675)로 1966年度臺數基準 12,642 (12,914)를 13,385 (13,657)로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訓令第225號

國 光 通 輸 局  
서울特別市電氣運輸事業所  
서울特別市運輸事業工務課

서울特別市運輸事業所從業員人事委員會規程을 다음과 같이 命한다

西曆 1967年 1月 18日

서울特別市長 金 二 五

서울特別市運輸事業所從業員人事委員會規程

第 1 條(目的) 이 規程은 서울特別市運輸事業所 從業員의 懲戒處分을 行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運輸事業所從業員規程 第52條 第1項의 規定에 人事委員  
會(以下 委員會라 한다) 運營에 關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는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委員 4人以内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事業所의 人事擔當課長이 되고 委員은 事業所從業員中에서 市長  
이 任命한다

第 3 條(委員長の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職務를 行한다  
②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  
行한다

第 4 條(幹事와 書記) ①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와 書記 各 1  
人을 둔다  
②幹事는 事業所庶務擔當係長이 되고 書記는 事業所從業員中에서 市長이 任  
命한다  
③幹事와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庶務에 從事한다

(20) 훈 령

第5條(懲戒議決의 要求) ①事業所長은 懲戒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委員會에 懲戒를 要求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懲戒議決의 要求는 懲戒事由에 對한 充分한 調査를 行한後에 別紙第1號書式에 依한 懲戒議決要求書에 依하여야 한다

第6條(懲戒議決期限) 委員會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받았을 때에는 그 要求書를 接受한 날로부터 10日以內에 議決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當該委員會의 議決도 30日까지 延長할 수 있다

第7條(懲戒嫌疑者의 出席과 審問) ①委員會가 懲戒를 進行할 때에는 반드시 懲戒嫌疑者를 出席시키고 必要한 事項을 審問하여야 한다

②委員會가 懲戒嫌疑者의 出席을 命할 때에는 別紙第2號書式에 依한 出席通知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懲戒嫌疑者가 出席할 수 없는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事實을 記錄하고 書面審査를 할 수 있다

④懲戒要求權者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委員會에 出席하여 陳述할 수 있다

第8條(議決) 委員會는 3名委員3分の2 以上の 出席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第9條(議決의 通知) 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은 別紙第3號書式의 懲戒議決書에 依하여 懲戒要求者에게 遲滯없이 通知하여야 한다

第10條(會議의 非公開) 委員會의 懲戒에 關한 會議은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11條(秘密洩洩禁止) 委員會의 懲戒에 關한 會議에 參與한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懲戒의 執行) 懲戒權者는 懲戒議決書를 받은 날로부터 5日以內에 이를 執行하여야 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67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別紙第1號書式 懲戒議決要求書

人的事項	姓名	( )	職名	所屬
			生年 月日	在籍 期間
	本籍			
	現住所			
懲戒事由				
懲戒者 의 決 意 見				
위와 같이 懲戒議決을 要求함 年 月 日 (機關名) 職位 人事委員會委員長 貴下				

別紙第2號書式 出席通知書

人的事項	姓名	( )	所屬
			職名
	本籍		
	現住所		
出席理由			
出席日時	年 月 日	時 分	
出席場所			
其他			
서울特別市運輸事業所從業員人事委員會規程 第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 와 같이 貴下의 出席을 通知합니다 年 月 日 貴下 人事委員會委員長			



(22) 委 司

別紙第3號書式.

懲 戒 議 決 書

懲戒嫌疑者人的事項	職 名	姓 名	所 屬
議決本文			
理 由			
年 月 日			
人 事 委 員 會			
		委 員 長	㉞
		委 員	㉟
		委 員	㊱
		委 員	㊲
		委 員	㊳
		幹 事	㊴

◎서울特別市訓令第226號

- 企 劃 管 理 室
- 內 務 局
- 財 務 局
- 都 市 計 劃 局
- 建 設 局
- 水 道 局
- 保 健 社 會 局
- 觀 光 運 輸 局

서울特別市 無許可 建築物 對策委員會 規程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

西紀 1967年 1月 27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 無許可建築物對策委員會規程

第1條(目的) 無許可建築物의 綜合的인 撤去對策을 審議하여 二 效率的인 處理方案을 市長에게 建議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 無許可建築物 對策委員會 (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職務) ①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無許可建築物의 集積撤去計劃에 關한 事項
2. 撤去民의 先着對策에 關한 事項
3. 撤去民救護에 關한 事項
4. 其他 委員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

第3條(組織) ①委員會에 委員長을 두되 都市計劃局長이 된다

②委員은 企劃官, 檢査課長, 管財課長, 建築課長, 社會課長, 保健課長, 管理課長, 運輸行政課長, 施設課長이 된다

第4條(召集과 審議) ①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二 議長이 된다

②會議는 委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第5條(建體) 委員會에서 審議決定된 事項은 市長에게 建議한다

第6條(幹事의 書記) ①委員會의 幹事를 建築課長이 兼任한다

②幹事는 建築課 建築行政係長이 되고 書記는 建築課 職員중에서 市長이 命한다

第7條(施行細則) 委員會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 議長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67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사 령

◎서기 1967년 1월 1일

0041

( 2 4 ) 사 령

서울특별시 건입을 명함	학	제	근
지적기원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동북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형	원
대전시 건축을 명함			
기안부공무원(지방재정서기 김우석 휴직기간중)에 임함	유	대	형
5급 갑류 7호봉을 급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건입을 명함	대	건	시
거상행정서기보에 임함	문	기	철
2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유	유	동	철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기획조정 담당관에 포함			
4호봉을 급함			
기획관실 심사분석담당(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김	김	화	섭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심사분석담당관에 포함			
4호봉을 급함			
법무관실 법제담당관(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배	배	일	영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법제담당관에 포함			
4호봉을 급함			



공보실 공보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신	현	석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보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급함				
공보실 보도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김	영	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보도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급함				
행정과 능운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양	낙	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능운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급함				
행정과 시정연구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한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시정연구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급함				
감사관실 감사제1담당관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문	소	진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감사제1담당관에 보함				
4호봉을 급함				
감사관실 감사제2담당관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박	수	복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감사제2담당관에 보함				
4호봉을 급함				
운수행정과 운수행정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김	수	철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운수행정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급함				

(26) 사 령

사회과 노동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이	문	제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노동계장이 보함			
4호봉을 금함			
보건과 보건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박	순	철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보건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금함			
청소제1과 장비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장	세	환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장비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금함			
관리과 공지관리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김	진	욱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공지관리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금함			
업무과 관제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이	종	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관제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금함			
주정파 과정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이	홍	순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과정계장에 보함			
4호봉을 금함			
근우회관 관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김	진	순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관장에 보함			
4호봉을 금함			

공무원보육원사무과 사무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지	호	진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사무계장에 포함			
4호봉을 급함			
통계관실 통계기준담당관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경	지	호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통계기준담당관에 포함			
5호봉을 급함			
운수사업과 재무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집	계	선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재무계장에 포함			
4호봉을 급함			
세정과 적세계장직무대리 지방사서주사	작	수	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적세계장에 포함			
4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징수과장직무대리 지방사서주사	이	단	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징수과장에 포함			
4호봉을 급함			
상도구 지방행정주사	김	준	화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당	지	희
노동청 견출을 명함			
◎서기 1967년 1월 10일			
보육병원 지방행정서기보	이	규	국
지방공무원법 제63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7년 1월 12일			
수도국 경보광동공사사무소 토목기과	오	익	관

0043

13617

(28) 사 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동대문구 토목기과 황	부	성
제하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사무관 이	만	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3호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마포구 지방행정사무관 이	우	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3호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에 처함		
마포구 지방행정사무관 고	경	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공무원교육원주 행정과 과장 행정서기관 심	유		
내무국 행정과장에 보함			
행정과지관계과 과장 행정서기관 손	영	한	
재무국 관제과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지업무과 과장 행정서기관 김	병	준	
수도국 업무과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교과과정사무과 과장직무대리			
지방행정서기관 안	찬	희	
공무원교육원 사무과장직무대리물 명함			
공업과주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관 안		진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근무시 명함			
◎서기 196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신	심
지방간호기원에 임함			목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서기 1967년 1월 19일			
계획과 조전부지방포목기원보 오	중	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서기 1967년 1월 20일

대구시 이 인 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2호봉을 금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서 권 신

대구시 재출을 명함

최 수 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입함  
1호봉을 금함  
근속가봉 월60원을 금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로구 지방토목기원 이 백 진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토목기원 김 순 수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동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김 신 중

중구 근무를 명함

던 천 중

기한부공무원(지방토목기원보 조광육의 유직기간중)을 경함

5급을금 7호봉을 금함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기 1967년 1월 23일

안평동매수지사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홍 기 권

(30) 사 명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1월 24일

남부병원장 지방부기감 배 남 진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남부병원 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상 덕

병원장 공석기간중 그 직무를 대행 명함

◎서기 1967년 1월 25일

내무부 지방행정서기보 사 정 복

부산사 직출을 명함

장 영 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산업국 공업과 근무를 명함

채 홍 대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토목시험소경 토목과 근무를 명함

단 경무처 근무를 명함

◎서기 1967년 1월 6일

남양동 지방조무보조수 박 종 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1월 10일

동선동 지방행정서기 김 基 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1월 12일

장석동 지방행정서기보 이 응 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1월 16일

경수과 지방사서기보 최 정 훈  
부과과 근무할 경함

부과과 지방사서기보 최 정 훈  
경수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7년 1월 21일

경능 제3동 지방행정주사 최 성 네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1월 6일

도화제2동 지방행정서기보 김炳 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1월 9일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 지 장 환  
하직을 명함

관란동 근무를 명함  
관란동 기한부 지방행정서기보 김 영 휘

기한부 공무원을 면함

◎서기 1967년 1월 23일

효창동 지방행정주사 윤 정 훈  
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울특별시고시제1호



( 3 2 ) 고 시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경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7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1. 공사시공로선 : 교대 ~충능간
2. 공사의 종류 : 확장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9월 18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2월 31일
5. 총 공사비 : 13,970,000원
6. 부담금총액 : 6,985,000원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2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경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고하 이에 고시함

서기 1967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1. 공사시공로선 : 청량리 ~중랑교간
2. 공사의 종류 : 확장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5월 30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2월 15일
5. 총 공사비 : 110,833,954원
6. 부담금총액 : 55,416,977원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3호



사료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갱신하였음을 고시한다

서기 1967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사료성분 등록갱신 사항

등록번호	공 강		대 표 자		사 료			사료의 성분량				
	명칭	소재지	주 소	성명	종류	명칭	용도	조질	조단	조단	조단	조단
44	서부사료공사	마포구 서대문구 신당동 188-7	서대문구 신당동 188-12	정규봉	중추배합사료	중추사료	중추용	16.4	4.7	1067.1	1067.1	1067.1
45	◇	◇	◇	◇	유추배합사료	유추사료	유추용	19.4	6.9	◇	◇	◇

◎서울특별시고시제4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같이 고시함

서기 1967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명 칭	위 치
종암 동품 프 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56
행 동 집 프 장	시별죽우서 서대문구 고남동 188
중원 동원 프 장	성동구 신당동 432-207

◎서울특별시고시제5호

서울시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인 일단의주택지경명사업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람케 한다

서기 1967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일단의 주위지 경영사업 집행자 지정조서

위 치	면 적	집행자 주소	집행자	비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문동 산 256의 1의 14필	22,549평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 1-1	원영대	

◎서울특별시고시제6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필하였음을 고시한다

서기 1967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사료성분 등록사람

등록번호	공 장		대 표 자		사 료			사료의 성분량				유효기간
	명칭	소재지	주 소	성명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질	조지방	조신유	조회분	
76	홍성사료공장	성북구 상문동 2가 323-28	성북구 상문동 14가 28	정태원	산란용 사료	산란용 사료	산란용 사료	15이상	2.5이상	7이상	11이하	67. 1. 28부터 69. 1. 27까지
77	〃	〃	〃	〃	유추사료	유추사료	유추사료	16이상	4이상	7이하	10이하	〃
78	〃	〃	〃	〃	유추사료	유추사료	유추사료	19이상	4이상	6이하	9이하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호

1966년산 추곡수매 요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곡수납 장소 별 일자를 지정하니 각오 무차는 이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7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수 납 일 시

수 납 장 소	1 회	2 회	비 고
취 경 동 사 두 소	1, 12	25	
망 우 출 장 소	13	26	

광 안 동 사 무 소	10	23
천 호 동 농 림 차 고	16	24
승 파	14	23
석 두 동	13	20
연 루 출 강 소	14	21
노 태	12	26
승 인	11	20
용 암 동 농 림 차 고	13	27
세 교 두 사 무 소	10	24
신 동 출 강 소	10	23
관 약 출 강 소	11	24
오 류 출 강 소	11	27
양 농 출 강 소	14	28
가 양 동 사 무 소	16	26
삼 평 경 미 소	17	27
구 로 1 동 사 무 소	13	21
대 렬 동 사 무 소	13	26

◎서울특별시공고제2호

서울특별시 각종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 공고

1. 시험실시 구분

시험면허종별	원서접수기간	학과시험일자	시 한 장 소
보 통 계 2 종	2. 3~2. 9	2. 11. 14:00	한남동소재 면허시험장
보 통 계 1 종	2. 10~2. 16	2. 18. 14:00	○
보 통 계 2 종	2. 23~3. 2	3. 4. 14:00	○
소 형 및 특 수	3. 4~3. 9	3. 11. 14:00	○

가.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일자는 학과시험장에서 알림

나. 학과시험 합격자의 기능시험일자는 학과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지정

받을 것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 (1) 교통관계법령
- (2) 구조 및 취급방법

나. 기능시험

- (1) 지각반응검사
- (2) 코—스 및 장거리

3. 응시자격

- 가. 도로교통법 제57조(면허시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보통제2종 및 소형, 특수면허응시자는 1940년도 이전에 출생자로서 출생일이 학과시험 실시일 이전이어야 함 것
- 다. 보통 제2종면허 응시자는 1942년도 이전에 출생한자로서 출생일이 학과시험 실시일 이전이어야 하고 보통 제2종면허를 받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

4.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매 (이때 신체검사만에 명동소재 국립경찰병원의 신체검사를 받을 것)
- 나. 주민등록표의 초본 1매
- 다.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에 따른 증명서
- 라. 사진 2매 (7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 마. 보통 제1종면허 응시자는 3년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 1부 (시, 도지사 발행)
- 바. 수수료 3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5. 제출처

용산구 한남동 소재 운전면허 시험장

6. 기 타

- 가. 필기시험도구는 5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할 것
- 나. 이후 각종 면허시험은 계속 실시하니 상해된 사항은 경찰국 교통과 또는 각 경찰서 교과계에 문의할 것

서기 196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청 김 현 국

◎서울특별시공고제3호

내무부고시 제23호(52. 3. 25)로 고시된 시청앞 광장 및 을지로 2가리의 도로 확장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수용할 토지 및 건물: 별첨과 같음

나. 공고장소: 시청계시관

다. 공고기간: 자 1967년 1월 13일 지 1967년 1월 23일(10일간)

서기 196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청 김 현 국

土 地 調 査

所在·地	地番·地目	實測地積	收用面積	所有權以外의權利內容	權利者의姓名 氏 記
中區小公洞	106~3 55	3/0	3/0		曹 寅 英
◇	105~4 ◇	12	12		徐 燦 芝
◇	105~6 ◇	2/14	2/14		韓 汝 大
◇	105 ◇	1/28	1/28		金 鎭 永
太平路2街	21~2 ◇	9/0	9/0		李 瑛 玉
◇	20~1 ◇	7/4	7/4		韓 烈 燾株式會社
◇	19~1 ◇	5/9	5/9		◇
◇	18~1 ◇	7/14	7/14		金 鎭 壽
◇	17~1 ◇	6/38	6/38		◇
◇	34~2 ◇	6/4	6/4		梁 三 順
乙支路7街	186~1 ◇	8/40	8/40		金 蓮 俊
◇	192~6 ◇	2/33	2/33		東邦建設株式會社
◇	190~7 ◇	9	9		◇
◇	19 ◇	23	23		金 三 得
◇	19 ◇	5	5		東方建設株式會社

乙支路1街	198~7	◇	1/6	1/6	孫景連
◇	197~2	◇	8	8	◇
◇	178~1	◇	8/16	8/16	三和化學工業株式會社
◇	157~1	◇	37	37	中央石油株式會社
◇	165~1	◇	3/14	3/14	金永宅
南大門路2街	151~1	◇	7/10	7/10	金榮洙
◇	152~1	◇	6/1	6/1	◇
◇	151~3	◇	7/15	7/15	崔明星
◇	140~1	◇	3/119	3/119	韓國産業銀行
乙支路1街	140~1	◇	325	325	◇
◇	180~2	◇	6/290	6/290	國際觀光公社

建 物 調 査

所 在 地	地 番	收 用 坪 數	所 有 者	備 考
乙支路1街	187	1棟	金連俊	
◇	188	3棟	◇	
◇	197	1棟	孫景連	
◇	192~7 198~1	1棟	東邦建設株式會社	
◇	179 178	1棟	三和메인 트工業株式會社	
◇	167 168	2棟	中央石油株式會社	
◇	166 165	1棟	金永宅	
南大門路2街	151 154	2棟	張的烈	
◇	152 ◇	1棟	金就玉	

◎서울특별시공고제4호

건설부 고시177호(62년 12월 8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 고래앞~성무역간 도로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 사 명 : 코대앞~성동역간 도로공사
2. 기점및종점 : 코대앞~성동역
3. 토지의세목 : (별대조서와 같음)
4. 건물외세목 : (별대조서와 같음)

서기 1967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신 우

土 地 調 査

일련 번호	분할전포지		지 주	분할후포지		소 속 자		관 련 인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주 소	성 질	주 소	성 질
1	계기동 136~56	9	계기동 136~56	9	136~56	許千以			
2	〃~214	7	〃~214	7	〃~53	趙 興			
3	〃~215	8	〃~215	8	〃~52	全宜京			
4	〃~216	8	〃~216	8	利川·利川 합면 370	申鍾信			
5	〃~73	27	〃~73	27	강희동 28	李永順	136-73	300,000	李永慶
6	〃~74	32	〃~74	32	136~74	全福冠			
7	〃~75	24	〃~75	24	〃~75	趙時誠			
8	〃~76	23	〃~76	23	〃~76	金永祥			
9	〃~77	23	〃~77	23	〃~77	李永順			
10	〃~78	38	〃~78	38	〃~78	朴 埴	136-78	1,500,000	
11	〃~79	16	〃~79	16	〃~79	楊萬永			
12	〃~80	50	〃~80	50	136	郭五堤			
13	〃~225	10	〃~225	10	136~137	李寬淳			
14	〃~84	42	〃~84	42	136~84	李鶴泳			
15	〃~67	19	〃~67	19	〃~61	張福童			
16	〃~66	20	〃~66	20	〃~66	金美法			
17	〃~63	13	〃~63	13	신정동 197	申明漢			
18	〃~64	33	〃~64	33	136~64	崔慶玉			
19	〃~184	27	〃~184	27	〃~184	李厚敏			

20	〃~181	20	〃	〃~181	20	〃~181	申昌浩	
21	156~271	23	〃	136~271	23	양주白石面 孔付里 60%	洪鍾萬	
22	〃~195	9	〃	〃~195	9	安岩 5가108	金東在	
23	〃~196	24	〃	〃~196	24	136~196	林秉淑	
24	〃~197	23	〃	〃~197	23	〃~197	金正舜	
25	〃~198	47	〃	〃~198	47	〃~198	金正憲	서울시장품
26	〃~180	17	〃	〃~180	17	용두동48~2	鄭口馨	
27	〃~33	158	〃	〃~33	158	〃	〃	
28	122~63	3	〃	122~63	3	122~62	李寅采	
29	123~2	32	番	123~2	32	東洋拓植株 式會社		
30	136~211	23	〃	123~21	5	136~211	潘順子	
31	〃~207	620	〃	136~207	597	종암 29	趙寅熙	
32	〃~85	30	〃	〃~85	27	136~85	金寬榮	
33	〃~20	15	도로	136~20	2	仁義 93	吳德三	
34	〃~8	98	〃	136~243	16	〃	〃	
35	〃~9	196	〃	〃~9	187	종암 29	趙寅熙	1,000,000 중소기업 (供)
36	〃~54	24	〃	〃~25	0.9	136~54	金順龍	
37	〃~53	25	〃	〃~26	6	〃~53	趙興	
38	〃~52	30	〃	〃~51	18	〃~52	金寅京	
39	〃~51	34	〃	〃~51	33.3	〃~51	徐廷禮	
40	〃~50	31	〃	〃~249	11	貞洞 16	趙謙錫	
41	136~38	31	〃	〃~230	1	136~38	李金愛	
42	〃~6	184	〃	〃~231	31	종로6가121	金順泰	
43	〃~6	184	〃	〃~232	39	〃	〃	신서동163 申明漢
44	〃~6	184	〃	〃~233	11	〃	〃	
45	〃~6	184	〃	〃~234	52	〃	〃	
46	〃~6	184	〃	〃~235	5	〃	〃	
47	〃~57	29	〃	〃~27	6	155~57	郭五星	대화동 150,000 고용호
48	〃~72	37	〃	〃~238	2	〃~72	李英純	



49	〃~72	39	〃	〃~239	5	〃	〃
50	〃~70	20	〃	〃~260	0.8	〃~73	李鳳光
51	〃~69	31	〃	〃~261	14	〃~69	李淑子
52	〃~68	28	〃	〃~68	27	〃~61	張顯章
53	〃~32	33	〃	〃~69	25	電話 3462	張顯章
54	〃~182	25	〃	〃~182	24.3	電話·電報 409	李四雨
55	〃~183	34	〃	〃~209	19	137~2	任煥炎
56	〃~183	34	〃	〃~170	1	〃	〃
57	〃~80	35	〃	〃~70	12	電話·電報 202	任煥炎
58	〃~81	46	〃	〃~64	3	136~61	趙厚敏
59	〃~82	32	〃	〃~82	16	〃~82	金哲圭
60	〃~226	276	〃	〃~226	226	電話 54 16~8	金哲圭
61	136~206	32	III	136~263	21	電話 137-63	李大勇
62	〃~206	32	〃	136~362	3	〃	〃
63	〃~19	22	〃	136~265	18	〃	〃
64	137~11	65	III	137~475	20	電話 177~10	金哲圭
65	〃~1	29	〃	〃~1	21	137~1	林昌文
66	〃~319	62	〃	〃~319	45	〃~319	宋禮堂
67	〃~327	36	〃	〃~327	29	電話 24~3	任煥炎
68	〃~330	24	〃	〃~479	11	〃	〃
69	〃~330	24	〃	〃~480	9	〃	〃
70	〃~438	9	〃	〃~438	5	電話 54108	金哲圭
71	〃~385	24	〃	〃~385	15	電話 65	林熙昌
72	〃~414	28	〃	〃~483	2	137~2	李英石
73	〃~391	20	〃	〃~391	17.2	電話 1915	金熙子
74	〃~390	23	〃	〃~486	12	137~390	李川五
75	〃~440	21	〃	〃~440	2	電話·電報 916	金哲圭
76	〃~449	7	〃	〃~449	2.6	137~449	劉煥燾
77	〃~349	31	〃	〃~489	20	電話·電報 157	李顯淑

(42) 공 고

78	〃~439	55 토	〃~491	10	안암 5가108	金東煥
79	〃~439	55	〃~92	38	〃	〃
80	122~62	29	122~12	22	122~62	李寅采
81	122~26	49	122~13	0.6	122~16	金德洙
82	122~1	62	122~117	38	122~7	정운용 외 13人

建 物 調 査

연호	소재지	지 번	구호	총평수	수용평수	소유자주소	성 명	비 고
1	계기동	136~9	문조금 과	20.87	20.87	계기동 136~9	尹南炳	
2	〃	〃~9	〃	16.31	16.31	양주군진집면봉 영리53	柳榮順	
3	〃	〃~53	〃	16.44	3	136~53	趙 興	
4	〃	〃~52	〃	12.07	4.5	〃~52	南貴鳳	
5	〃	〃~51	〃	16.09	16.09	〃~51	徐廷禮	
6	〃	〃~50	〃	13.90	6.5	〃~50	郭重錫	
7	〃	〃~86	〃	22.20	22.20	〃~86	郭成福	
8	〃	〃~85	〃	10.60	10.60	〃~85	金寬榮	
9	〃	〃~223	〃	10.00	10.00	〃~223	玄荊榮	
10	〃	〃~84	〃	11.80	11.80	〃~84	李聖洙	
11	〃	〃~83	〃	10.04	10.04	〃~83	金東周	
12	〃	〃~82	〃	11.82	5.82	〃~82	金哲圭	
13	〃	〃~81	〃	11.80	4.5	〃~81	趙秀贊	
14	〃	〃~80	〃	14.20	7.20	〃~80	洪鍾萬	
15	〃	〃~79	〃	8.80	8.80	〃~79	楊澈永	
16	〃	〃~78	〃	11.68	11.68	〃~78	朴 燦	
17	〃	〃~77	〃	7.80	7.80	〃~77	李永禮	
18	〃	〃~76	〃	9.40	9.40	〃~76	全永祥	
19	〃	〃~75	〃	9.60	9.60	〃~75	趙時鎔	
20	〃	〃~74	〃	9.95	9.95	〃~74	金福經	

21	◇	136~73	◇	10.00	10.90	136~73	李永香
22	◇	◇~72	◇	14.20	9.8	◇~72	李美姬
23	◇	◇~70	◇	10.00	3.5	◇~70	李鳳先
24	◇	◇~69	◇	16.26	8.14	◇~69	李淑子
25	◇	◇~98	◇	8.40	8.40	◇~98	李淑姬
26	◇	◇~66	◇	6.00	6.00	◇~66	金允洙
27	◇	◇~64	◇	16.00	16.00	◇~64	崔漢玉
28	◇	◇~181	◇	11.65	11.65	◇~181	禹淳模
29	◇	◇~182	◇	10.08	10.08	◇~182	李頌雨
30	◇	◇~198	◇	11.50	11.50	◇~198	金正奎
31	◇	◇~197	◇	8.70	8.70	◇~197	金正錫
32	◇	◇~196	◇	8.70	8.70	◇~196	金正錫 林宗淑
33	◇	◇~122	◇	11.80	11.80	◇~122	李休烈
34	◇	◇~63	◇	10.90	10.90	◇~63	李又淑
35	◇	◇~32	◇	14.39	14.39	영운 3기02	張鴻在
36	◇	◇~61	◇	11.09	3	136~61	張福新
37	◇	◇~27	◇	11.50	11.50	◇~27	李太賢
38	◇	◇~207	◇	17.60	17.60	◇~207	趙興熙
39	◇	◇~62	◇	7.87	4	◇~97	崔得英
40	◇	◇~99	◇	12.20	12.20	◇~99	金允仁
41	◇	122~2	◇	74	74	122~2	李相興

◎서울특별시공고제5호

주택용자금 채납으로 인하여 당시에서 안부한 재산을 동영주지법 제1434 국  
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코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함

1. 공매물건표시

공매번호	공매구입	수량	지 남 자	
			주 소	상 목
1	기 화	850매	동대문구 전농동 65의6	부 합 자

(42) 공 고

1	구 들 들	4명 동대문구 전등동 65외6	유 함 자
1	목 재	9명1등분	〃

2. 공 매 방 법 : 일반경쟁입찰
3. 제입찰일시 : 1967년 1월 20일 11:00
4. 입찰장소 : 당시 재무국 주택과 입찰실
5. 입찰장소 : 입찰가격의 1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수표
6. 낙찰대금 및 물품인도 : 낙찰 당일 에 낙찰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물품을 인도함
7. 부대조건 : 지정일까지 배찰을 완납치 않을시는 본 경매결정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시수입으로 귀속함
8. 기타 : 상세한 것은 당시 선택과에 문의할 것

서기 1967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6호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사업 지구토지 구획경리지구는 별지 환지 확정지정서 및 도면과 같이 환지 확정하였기 토지구획경리 사업법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별지 환지 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사무과 및 마포·서대문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음

서기 1967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7호

대우부요계 제23호(52년 3월 2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이 신수동 열리동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코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 사 명 : 신수동~염리동간 도로공사

2. 토지의세목 : 별지조서와 같음

서기 1967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청 김 권 옥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산지	면적	지목	지적	소유자	관	지	인	비고
1	마포구	산지	148~34	㎡	3	김주현	노	양	공용조각	
2	염리동	산지	148~11	㎡	35.9	김국원	없	없	음	
3	산지	산지	148~38	㎡	4	김기수	없	없	음	
4	산지	산지	148~56	㎡	5	김승호	없	없	음	
5	산지	산지	148~37	㎡	211	김	없	없	음	
6	산지	산지	153~2	㎡	106	김공회	없	없	음	
7	산지	산지	154~17	㎡	4	김용범	없	없	음	
8	산지	산지	154~19	㎡	29	김용범	없	없	음	
9	산지	산지	154~21	㎡	20	김용범	없	없	음	
10	산지	산지	154~15	㎡	84	김천득	마포구	공용조각	378-6	
11	산지	산지	156~2	㎡	0.5	박부경	마포구	공용조각	62	
12	산지	산지	156~3	㎡	27.1	박부경	없	없	음	
13	산지	산지	155~5	㎡	400	박일준	없	없	음	
14	산지	산지	155~7	㎡	577	박호사	없	없	음	
15	산지	산지	155~9	㎡	0.2	이동수	마포구	공용조각	155-7	
16	산지	산지	178~30	㎡	4	김낙택	없	없	음	
17	산지	산지	173~29	㎡	15	문병진	없	없	음	
18	산지	산지	175~1	㎡	2	이순화	없	없	음	
19	산지	산지	179~2	㎡	36	김	없	없	음	
20	산지	산지	180~1	㎡	96	이천환	없	없	음	
21	산지	산지	180~2	㎡	27	박아기	없	없	음	
22	산지	산지	180~21	㎡	2	서경석	없	없	음	

(46) 풍 고

23	◇	180~22	◇	1	김기숙	◇	
24	◇	154~14	◇	114	김정길	◇	
25	마포구 대흥동	197~2	◇	1	빈경성	없	음
26	◇	196~1	◇	19.5	신현식	◇	
27	◇	194~3	◇	5	변순주	◇	
28	◇	195~1	◇	53	김기단	◇	
29	◇	200~2	◇	83	이순재	◇	
30	◇	201~1	◇	35	차상환	마포구영근동 84~3 250,000원 근저당 한국상업은행	
31	◇	201~2	◇	47	◇	◇	
32	◇	202~12	◇	2	박광선	없	음
33	◇	203~2	◇	42.9	송부석	◇	
34	◇	204~2	◇	23	김태산	◇	
35	◇	202~13	◇	9	조천환식	◇	
36	◇	202~14	◇	9	김경인	◇	
37	◇	202~15	◇		조명현	◇	
38	◇	209~1	◇	45	김기숙 배차진	마포구대흥동 129	
39	◇	209~2	◇	1	배차진	없	음
40	◇	210~2	◇	27	황규복	◇	
41	◇	190~2	◇	35	최현학	◇	
42	◇	187~1	◇	27	임우택	◇	
43	◇	186~2	◇	8	부영인호	◇	
44	◇	185~3	◇	11	재단법인 한도학원	◇	
45	◇	140~4	◇	49	안홍록	◇	
46	◇	150~3	◇	5	이상실	◇	
47	◇	138~1	◇	90	이태석	◇	
48	◇	137~2	◇	11	김숙선	◇	
49	◇	136~1	◇	56	정준명	◇	
50	◇	133~1	◇	49	김원용	마포구대흥동 283	임상제
51	◇	132~2	◇	2	권오봉	없	음

52	◇	131~2	◇	5	최천만	◇	
53	◇	154~1	◇	14	홍상근 남원수	◇	고등 45
54	◇	130~1	◇	17	김정순	◇	없 음
55	◇	129~1	◇	38	김기옥	◇	
56	◇	262~2	◇	8	김덕화	◇	
57	◇	263~3	◇		홍경덕	◇	
58	◇	263~4	◇	6	김동수	◇	
59	◇	265~3	◇	17	남원수	◇	남원수 3,200,000
60	◇	267~3	◇	34	◇	◇	없 음
61	◇	267~3	◇	34	남정두	◇	없 음
62	◇	269~1	◇	36	김영만	◇	
63	◇	270~3	◇	3	이희중	◇	
64	◇	271~3	◇	31	이태동	◇	
65	◇	272~2	◇	175	김경원	◇	
66	◇	276~2	◇	29	김경천	◇	
67	◇	283~4	◇	19	◇	◇	
68	◇	284~1	◇	59	박종인	◇	주용수형 230,000 원준희 390,000
69	◇	288~2	◇	0.5	홍만익	◇	없 음
70	◇	295~1	◇	27	유희순	◇	
71	◇	285~2	◇	2	◇	◇	
71	◇	318~1	◇	40.5	이윤용	◇	
72	◇	322~1	◇	43	이외용	◇	
73	◇	90~13	◇	3.7	백인호	◇	
74	◇	90~14	◇	2.3	◇	◇	
75	◇	118~14	◇	27	김천현	◇	
76	◇	118~7	◇	20	김영기	◇	
77	◇	118~10	◇	36	조용성	◇	
78	◇	111~2	◇	17	이석실	◇	마포구대동동 110 이석관
79	◇	109~2	◇	25	김민준	◇	마포구대동동 110 이석관
80	◇	107~2	◇	40	김기철 김기철 김기철 김기철 김기철	◇	없 음

81	◇	107~1	◇	34	중구경동 2가84집 순진의원28	◇	
82	◇	105~1	◇	31.9	덕광서	◇	음
83	◇	105~3	◇	0.1	◇	◇	
84	◇	105~4	◇	23	정경복	◇	
85	◇	106~1	◇	29	김순진 의원2인	◇	
86	◇	93~4	◇	23	배인호	서대문구원저동 107 백화점	
87	◇	90~20	◇	7	◇	◇	음
88	◇	90~9	◇	24	◇	마포구대흥동 186 백광순	
89	◇	90~24	◇	2.8	◇	◇	
90	◇	79~11	◇	7	◇	◇	
91	◇	22~54	◇	5	김종갑	◇	음
92	◇	22~55	◇	10	장순용	◇	
93	◇	22~34	◇	7	배인호	대흥동 186 판타인	백인호
94	◇	22~17	◇	7	◇	◇	음
95	◇	1~5	◇	8	황태남	◇	
96	◇	9~7	◇	24	장진명	◇	
97	◇	10~4	전	13	심당진	◇	
98	◇	34~31	◇	6	강우현	◇	
99	◇	34~30	대	7	허병성	◇	
100	◇	34~29	◇	8	채의식	◇	음
101	◇	34~28	◇	8	김임형	◇	
102	◇	34~12	전	16	이태식	◇	
103	◇	22~51	대	6	배인호	◇	
103	◇	22~6	◇	348	문종식	◇	
104	◇	22~51	◇	11	안복상	◇	
105	◇	22~5	◇	0.5	배인호	◇	
106	◇	1~4	◇	387	서강대학	마포구신수동 1~1 서강대학	
107	◇	22~5	전	8	심명진	◇	음
108	◇	33~4	◇	8.3	채병은	◇	



109	◇	33~3	◇	6	이남진	마포구 선수동 34~3		
110	◇	34~1	대	35	김광수	없	이음선	◇
111	◇	33~1	◇	4	조동병			◇
112	◇	33~6	◇	9	◇			◇
123	◇	33~9	◇	18	박정기			◇
124	◇	32~4	◇	5	◇			◇
125	◇	12~6	전	25	김영민			◇
126	◇	83~3	◇	105	서광대학			◇
127	◇	82~19	◇	246	서강대학			◇
		82~3	◇	94				◇
128	◇	91~75	대	4	정준원	없	◇	◇
129	◇	81~74	대	8	이상준			◇
130	◇	81~71	대	155	전옥옥			◇
121	◇	82~20	전	14	이광희			◇
131	◇	63~12	대	441	농림부	마포구 선수동 61~7		◇
132	◇	81~39	◇	117	김현용	마포구 선수동 47-57	이영	◇
						마포구 선수동 38-71	김석용	◇
133	◇	154~11	대	14	홍근은	없	◇	전필지
134	◇	90~2	◇	20	김기부			◇
135	◇	90~3	◇	2	박인호			◇
		90~10	◇	12				◇
136	◇	110	◇	12	이석환			◇
137	◇	122~2	◇	21	이유진			◇
138	◇	122~3	◇	32	정수근			◇
139	◇	123	◇	39	주경숙			◇
140	◇	124	◇	44	은도업			◇
141	◇	125	◇	51	김영성			◇
142	◇	93~3	◇	21	박인호	서대문구 월계동 107		◇
143	◇	126	◇	50	김금단	없	◇	◇
144	◇	127	◇	13	이순관			◇
145	◇	128	◇	28	김원용			◇
146	◇	134	◇	29	최유승			◇

147	마포구 대흥동	135	18	홍순용	없	음
148	◇	138~2	15	이사봉	◇	◇
149	◇	139	48	이정녀	◇	◇
150	◇	140~2	54	최희장	외주모2가16 서울수 신주식회사 100,000	◇
151	◇	141	11	정만홍	없	음
152	◇	142	15	◇	◇	◇
153	◇	184	55	반도학원	중구산림동 89 반도학원	◇
154	◇	185~2	15	◇	◇	◇
155	◇	187~2	16	최순창	마포구대흥동 190 최순창	◇
156	◇	188	14	◇	◇	◇
157	◇	189	15	김천막	없	음
158	◇	200~1	10	이정어	◇	◇
159	◇	203~1	8	신상궁	마포구열리동84~3 신 상궁 상업은행 250,000	◇
160	◇	208	114	김우식	없	음
161	◇	271~1	58	김기환	◇	◇
162	◇	273~1	6	심명진	◇	◇
163	◇	273~2	15	◇	◇	◇
164	◇	274	18	◇	◇	◇
165	◇	275~1	8	이경택	275~2 이경택	◇
166	◇	275~2	54	◇	◇	◇
167	◇	283~1	37	임성채	없	음
168	◇	283~3	16	심재하	◇	◇
169	◇	319	12	박순문	없	음
170	◇	320	23	심중현	◇	◇
171	◇	322~1	19	이외용	◇	◇
172	◇	321~1	16	이윤용	마포구대흥동 318 이윤용	◇
173	마포구 신수동	34~1	24	이중업	농업은행 70,000 중업 70,000	◇
174	◇	34~1	89	이대석	없	음
175	◇	34~1	35	이용순	◇	◇

176	◇	34~10	◇	28	이용화	중구삼림동 114 외강남
177	◇	34~11	◇	31	김복선	없 음
178	◇	81~68	◇	34	김계용	동대문구신선동385~ 191 김계용
179	◇	82~10	전	36	부곡동 영희사	없 음
180	◇	83~2	◇	55	서강대학	◇
181	◇	8~5	◇	11	손운숙	마포구신수동 9-1 손운숙
182	◇	8~6	배	19	이남순	◇ 9~3 이남순
183	◇	8~8	전	13	정광영	동대문구용동205~9 정광영
184	◇	9~1	◇	37	조진현	성파동 121~3 조진현 조용순애 1:30,000
185	◇	9~3	대	18	이남순	없 음
186	◇	9~4	◇	14	이영경	◇
187	◇	9~5	전	6	김원영	동대문구용동205~9 김원영
188	◇	9~6	◇	28	이태수	없 음
189	◇	9~8	◇	33	김석연	◇
190	◇	22~7	대	11	전계수	◇
191	◇	22~19	◇	36	나선균	◇
192	◇	22~20	◇	31	신순희	◇
193	◇	22~35	◇	15	배인호	22~34 배인호
194	◇	22~58	◇	3	◇	없 음
195	◇	34~3	전	27	이용선	◇
196	◇	34~4	◇	25	최병은	◇
197	◇	8~4	◇	28	김영진	◇
198	◇	22~16	대	2	남영구	마포구도동 79 남영구
199	◇	22~26	◇	4	신순희	없 음
200	◇	24~8	전	17	이태석	34번지
201	◇	87~2	◇	3	박정자	없 음
202	◇	87~3	◇	0.8	◇	강원도 철위서 적정면 가수리 255 박정자
203	마포구 열티동	148~30	대	27	최남서	없 음

(5.2)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구광포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지정하고 관계 조서 및 도면은 장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서대문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총합에 공한다

서기 1967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9호

내무부 고시제23호(52년 3월 25일)로 고시된 윤지로 1가 지내 도로확장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수용요계 세목공고 함

가. 공고내용: 편입과 지움

나. 공고장소: 시청제시관

다. 공고기간: 1967년 1월 24일~67년 1월 30일 (7일간)

서기 1967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土地調査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所有者	備考
乙支路 1街	168	塗	10	崔 大 鎔	
〃	169~1	〃	16	〃	

2. 建物調査

所在地	地番	階數	坪數	所有者	備考
乙支路 1街	160 169~12	철와 조승	58/60	崔 大 鎔	

◎서울특별시공고제10호

시유재산 매각 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국유 재산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공매 함

1. 계산목록

공 고 번 호	재 산 회 표 시		지 목	지 계	비 고
	구 동	지 번			
1	성북수유	102~1의 2필지	내	238.30	수용필지지구 25
2	중구저동 1가	2~7	내	27.30	

2. 입찰 장소: 당시 수도권 입찰실
3. 입찰 일시: 1967년 1월 31일 10:00
4. 입찰 등록: 1967년 1월 30일 17:00시 시정국제 납세권증을 구비하여 당시 수도권 업무부에 등록 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 현금 또는 시정에서 보증수로로서 동봉 이찰하여야 함
6. 개찰장소 및 일시: 입찰후 즉시 개찰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관이 예고 함
7. 배 작 조 건: 가.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1 이상 자립저축을 하여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서 3할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단 낙찰자가 위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재산 매각후 경수에 증감이 생활 경우에는 당시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시 업무부에 문의 하시말  
위 공고함

서기 1967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特別市公告第11號

家庭用石油販賣所位置公告

市民, 어머분에게 最大限의 便宜를 提供하여 드리기 위하여 石油販賣店을 設

(54) 공 고

無限制으로 增設하여 設ける지 市民이 必要로 하시면 近距離에서 손쉽게 購入 할수 있도록 措置하였오니 다음 事項을 告知하시여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販賣量은 無限制으로 行爲되어 있습니다

1. 價格 石油價格 1/當 20원

2. 石油量 販賣하는 곳

가. 代運店

- 株式會社 第一社 中區太平路1가59 ☎ 1141・1144
- 中央石油 株式會社 中區乙支路1가167 ☎ 3425・3426・6186・6186・6187
- 朝陽石油 株式會社 中區太平路1가60의2 ☎ 0595・8544・8545
- 株式會社 三一社 中區武橋洞15 ☎ 3314・4314・6314
- 서울石油 株式會社 中區太平路1가64의4 ☎ 1236~1239・5240
- 株式會社 美隆商社 中區乙支路1가100 ☎ 4475・5645・1290

나. 注油所

西南	注油所	中區蘆栗洞1가131
乙五	◇	◇ 乙支路5가209
鋪子洞	◇	◇ 忠武路2가52의4
中郡	◇	◇ 筆洞2가51
廣社	◇	◇ 光熙洞1가218
芹山	◇	◇ 鋪字洞4가7
서울	◇	◇ 東子洞43의1
第一	◇	◇ 乙支路5가59
南大門	◇	◇ 南大門路4가17
忠武路2가	◇	◇ 忠武路2가62의2
忠武路6가	◇	◇ 忠武路5가19의6
龍馬	◇	◇ 太平路1가64의4
東子洞	◇	◇ 東子洞14의125
筆洞	◇	◇ 筆洞2가3
乙支路	◇	◇ 乙支路6가53의55
鐘路	◇	◇ 鐘路區鐘路3가43
新門路	◇	◇ 新門路1가62
惠化洞	◇	◇ 惠化洞112
教化門	◇	◇ 臥龍洞15
安國洞	◇	◇ 安國洞175

甯洞	◆	◆ 慶雲洞644
濟涼里	◆	東大門區祭基洞2441
城東	◆	◆ 龍項洞70046
濟涼里驛前	◆	◆ 興島洞50643
安岩	◆	◆ 龍項洞234
藥仁	◆	◆ 新設洞11641
里門洞	◆	◆ 里門洞2354119
中溪橋	◆	◆ 中和洞213
東大門	◆	◆ 藥仁洞310
新堂洞	◆	城東區新堂洞27342
寺山	◆	◆ 聖水洞24706
千戶洞	◆	◆ 千戶洞2470
三千里	◆	◆ 下往十里洞30411
往十里	◆	◆ 杏堂洞31
栗水洞	◆	◆ 舞鶴洞1242
奉陽洞	◆	◆ 奉陽洞150425
光成	◆	◆ 千戶洞44248
馬場洞	◆	◆ 馬場洞55246
九川	◆	◆ 千戶洞41943
彌阿里	◆	城北區彌阿里6045
貞陵	◆	◆ 貞陵洞404
鐘岩	◆	◆ 鐘岩洞34535
鉢北	◆	◆ 水陰洞306
盤園	◆	城北區文小門洞64116
牧岩洞	◆	◆ 東仙洞
水陰里	◆	◆ 水陰洞山241
三角地	◆	龍山區鏡江路2423
龍山	◆	◆ ◆ 3465
龍江	◆	◆ 元曉洞2470
元曉峰	◆	◆ ◆ 4117
漢南洞	◆	◆ 藥師院洞山13419
大成	◆	◆ 漢南洞13419
萬月洞	◆	◆ 萬月洞11434
太平	◆	西大門區西小門洞12
日蓮	◆	◆ 北河鏡洞12647

(56) 附 錄

西大門	◇	◇	魏州路1가37			
弘濟洞	◇	◇	弘濟洞22의3			
佛光洞	◇	◇	佛光洞272의5			
水色	◇	◇	水色洞154의5			
新道林	◇	◇	永登浦區新道林洞983의2			
黑石洞	◇	◇	黑石洞9의19			
空港	◇	◇	空港洞11			
永登浦	◇	◇	永登浦洞1가92			
大方洞	◇	◇	新大方洞563			
九老洞	◇	◇	九老洞705의7			
鷲梁津	◇	◇	鷲梁津洞148의8			
永登浦	◇	◇	永登浦洞4가8			
文來洞	◇	◇	文來洞2가4의3			
大韓	◇	◇	永登浦洞2가314			
老姑山	◇	◇	麻浦區老姑山洞101의10			
麻浦	◇	◇	新水洞448의10			
<p>다. 副販(小賣所)</p> <p>(1) 瓦設置</p>						
中區			太平路2가68의4	吳	孫	拱
◇			南大門路5가63의18	金	三	吉
◇			忠武路2가62의11	李	基	澤
鐘路區			慶雲洞93~12	朴	辛	喜
◇			臥龍洞12	李	載	星
東大門區			祭基洞54	김	창	달
◇			覆慶洞194의106	徐	光	德
◇			上鳳洞195~17	李	康	鐵
◇			典農洞617	徐	浩	錫
◇			普門洞5가261	안	용	승
◇			踏十里洞118	申	鉉	豊
城東區			下往十里洞85	조	대	환
◇			新堂洞136	李	奉	環
◇			千戶洞403~11	黃	奉	性
◇			杏堂洞31	金	壽	慶
◇			驛三洞67~1	조	경	立
◇			金湖洞3가203	이	현	子



◇	후인동2~7	이	기	덕
◇	聖水洞2가63	白	東	飲
◇	下往十里洞12의18	飯	重	渡
◇	金湖洞4街966	金	化	毓
城北區	上溪洞156의10	鄉	鏡	輝
◇	彌阿洞703	金	鏡	輝
◇	雙門洞345	金	鏡	輝
◇	彌阿洞42의10	金	鏡	輝
◇	東小門洞1街1	林	圭	石
◇	◇ 6街103	林	圭	石
◇	彌阿洞60의5	朴	萬	禧
西大門區	北阿峴洞126	이	萬	禧
◇	水色洞153의2	김	창	년
◇	平倉洞231	김	창	년
◇	弘濟洞167의24	趙	聖	善
◇	佛光洞	趙	聖	善
◇	橋北洞35의20	趙	聖	善
◇	南加佐洞104	나	주	현
◇	北阿峴洞126의7	조	영	현
◇	鷹岩洞23	조	영	현
◇	老姑山洞40의9	李	炳	善
龍山區	漢江路3街40	李	昌	顯
◇	◇ 1街273	李	昌	顯
◇	高月洞69의25	李	東	輪
◇	梨峯院洞113의9	李	東	輪
麻浦區	老姑山洞107	李	甲	祥
◇	桃花洞23	李	甲	祥
永登浦區	空津洞346	김	창	년
◇	始興洞102	이	창	년
◇	永登浦洞1街92	張	奎	희
◇	奉天洞711	張	奎	희
◇	文素洞2의14	孫	炳	대
◇	寺洞67의1	孫	炳	대
◇	良才洞3의1	李	기	영
◇	靈梁津洞148의8	李	기	영
◇	永登浦洞2街13	李	기	영

◇	九老洞566	박	제	덕
◇	上道洞137의2	李	文	榮
◇	黑石洞97의2	李	此	石
◇	任柳洞118의4	鄭	運	和
(2) 新規設置				
中區	鄭忠洞2街193의73	정	중	현
◇	王壯洞290의28	鄭	成	永
◇	光黑洞2街75	金	崇	源
◇	白賢洞1街194의38	이	인	관
◇	仁規洞2街141	유	정	관
鎮路區	仁義洞22의1	吳	壽	禮
◇	監志洞118	최	영	숙
◇	雲池洞98의11	柳	心	日
◇	昆水洞164	朴	大	安
東大門區	仁文洞影街15	신	석	고
◇	冠頭洞283의20	김	정	흥
◇	景仁洞240의1	崔	學	周
◇	綠基洞146의4	李	相	泰
◇	新門洞2街104	마	士	진
城東區	新堂洞361의14	朴	元	圭
◇	全湖洞2街487	李	在	根
◇	興仁洞109	元	透	哲
◇	道鏡洞46	金	康	順
城北區	龍岩洞3의545	李	鍾	求
◇	民位洞7의90	金	錫	基
◇	貞陵洞161	李	陽	烈
◇	東小門洞3街30	高	光	彦
◇	下月谷洞71의35	李	元	圭
西大門區	倉川洞72~22	金	準	詰
◇	55~123	鄭	行	端
◇	大藥洞山28~3	洪	性	允
麻浦區	孔德洞385~95	朴	世	榮
◇	東橋洞65	康	錫	虎
◇	孔德洞435~3	李	東	振
龍山區	元曉路1가141~2	金	福	同
◇	厚岩洞105~62	정	인	기

영등포구	사당동130~2	이	서	영
◇	양평동1가164	康	瑜	坤
◇	노량진동27~10	元	濟	新
◇	新道林洞72~4	車	甲	康
◇	봉천동35	이	의	탄
◇	上道洞361~35	趙	炳	氣
◇	堂山洞1가1	梁	熙	美

※參考 1967년 2월 5일까지 위의 販賣所外에 120個所를 더 增加한 것입니다

3. 街頭販賣: 1967년 1월 20일부터 開始 (每日 9時부터 日沒時까지) 各代理店直營巡回販賣車 6臺 1日積載量 1,200箱(24,000L)
4. 其 他: 買占賣惜行爲, 價倍違反販賣, 不純物混合 또는 容量을 속여 販賣할 때에는 遲滯없이 當局에 告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西紀 1967年 1月 2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특별시공고제12호

서울도시계획 역촌구획경리사업실시·인가를 건설부공고제9호(1967년 1월 21일)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구획경리사업법제2조이 규정한 사업은 아래약간의 실시함을 통고하는 바이며 관계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경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종람

서기 196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토지구획경리사업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역촌동 일부
- ◇ ◇ 구산동 일부
  - ◇ ◇ 대조동 일부
  - ◇ ◇ 선수동 일부
  - ◇ ◇ 용암동 일부
  - ◇ ◇ 녹번동 일부

약 770,000㎡

2. 사업시행기간

자 1967년 1월 20일

지 1970년 12월 31일

3. 유의사항

가. 서울도시계획 역촌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는 사업실시 기간중(공사)에 사업 집행상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당사가 사용케되오니 한지·경지 저경 및 정지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공작물설치 및 농경작행위를 금지할것이며 상기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구획정리사업법제39조의 규정에의거 사전에 시장의허가를 받을 것

나.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신 구 토지소유자 연사로 신고한 것

다. 공고후 전항의사항을 이행치않음으로서 발생하는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4.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는바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

◎서울특별시공고제13호

서울 도시계획 청동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인가물 건설부공고제9호(1967년 1월 21일)로 건설부장관의 실시인가를 얻어 구획정리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아래와같이 실시함을 공고하는바이며 관계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총람에 공함

서기 196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동 일부

〃 〃 〃 동 일부

〃 〃 〃 동 일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일부

2. 사업시행기간

자 1967년 1월 20일

지 1970년 12월 31일

3. 유의사항

가. 서울도시계획 광동 도지구획경리사업지구내 도지는 사업실시기간중 (공사)에 사업집행상 토지계획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사용케 되오니 환지에정지 지정 및 경지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공작물신식 및 농경작행위를 금지한것이며 상거경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획경리 사업법제39조의 규정에의거 사전에 시장의허가를 받을 것

나.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신 구 토지소유자의 연시로 신고할 것

다. 공고후 전항의사항을 이행치않음으로서 발생되는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4.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별도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는바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

◎서울특별시공고제14호

서울도시계획 화양 도지구획경리사업실시 인가를 건설부구고제10호(1967년 1월 21일)로 건설부장관의 실시인가를 얻어 구획경리사업법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아래와같이 실시함을 공고하는바이며 권계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경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권계인의 총람에 공함

서기 196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숙

1. 도지구획경리사업 시행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 일부

◊ ◊ 자양동 일부

◊ ◊ 모진동 일부

(62) 공 고

- 〃 〃 송저동 일부
- 〃 〃 평장동 일부
- 〃 〃 구외동 일부

약 640,000평

2. 사업시행기간

자 1967년 1월 20일

지 1970년 12월 31일

3. 유의사항

가. 서울도시계획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는 사업실시기간 중 (공사)에 사업점행장 2.시계획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사용케 되오니 환저예정지 지기 및 정기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공작물설치 및 능경작행위를 금지한것이며 상기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구획정리사업법제39조의 규정에외의 사전에 시장의허가를 받을것

나.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신 구 토지소유자의 연서로 신고할 것

다. 공고후 전랑의사항을 이행치않음으로서 발생되는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4.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느바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

◎서울특별시공고제15호

서울도시계획 망우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인가를 건설부공고제11호(1967년 1월 21일)로 건설부장관의 (시인가를 얻어 구획정리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아래와같이 실시함을 공고하는바이며 관제도면은 당시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탐에 공함

서기 196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지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무동 일부

- ◇ ◇ 상봉동 일부
- ◇ ◇ 중화동 일부
- ◇ ◇ 신내동 일부

약 1,140,000평

2. 사업시행기간

자 1967년 1월 20일

지 1967년 12월 31일

3. 유의사항

가. 서울도시계획 망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저는 사업실시기간중 (공사)에 사업집행상 도시계획법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당사가사용케 되오니 환지에경지 지경 및 경지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는 동작물설치 및 농경작행위를 금지할것이며 상기행위를 하고제 할때는 구획정리사업법제39조 규정에의거 사전에 시장의허가를 받을 것

나.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신 구 토지소유자의 연서로 신고할 것

다. 공고후 전항의사항을 이행치않음으로서 발생되는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4. 본 공고에 대한 서물상담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는바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

◎서울특별시공고제16호

서울도시계획 연무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인가를 건설부공고 제12호(1967년 1월 21일)로 건설부장관의 실시인가를 얻어 구획정리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아래와같이 실시함을 공고하는바이며 관계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탐에 공함

서기 196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64) 공 고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서울특별시 연희동 1부

약 420,000평

2. 사업시행기간

자 1967년 1월 20일

지 1970년 12월 31일

3. 유의사항

가. 서울도시계획 연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는 사업실시 기간 중(공사)에 사업집행시 도시계획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사용케 되오니 관지에정지 지경 및 경사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공작물 설치 및 능경작행위를 금지할것이며, 상기행위를 하고자할때는 구획정리사업법제39조의 규정에의거 사전에 시장외허가를 받을것

나.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신, 구 토지소유자의 연서로 신고할것

다. 공고후 전항의사항이 이행치않음으로서 발생되는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4. 본 공고에 대한 서부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느바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

◎서울특별시공고제17호

1. 서울특별시공고제9호로 고시된 울지로 1가 지내 도로확장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에대한세목공고 내용중 다음과같이 일부정정 공고함

가. 정정내용

서내 중구 울지로 1가 169~1 대 16평을 동소, 동번 대 16평 7함으로써 정정함

서기 1967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18호

1967년 1월 25일자로 시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낙번시장개설을 허가하였기 공고함

- 1. 시장명 : 낙번시장
-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용암동 74의3
- 3. 개설자 : 낙번상사·주식회사 대표 김형원
- 4. 권 적 : 500평 (1,652,900M<sup>2</sup>)
- 5. 건 평 : 205평 (6,732M<sup>2</sup>)
- 6. 시 설 : 가. 점포수 36개
  - 나. 건물 철근강크리트 내화구조
  - 다. 기타시설 시장법시행령 제1조에 의한 제시설

시가 1967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연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9호

시장개설 적격과 모집공고

당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책정된 시장용지 (채비지)를 매수하여 시장법상 시설과 경영을 할수있는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함

- 1. 시장용지의 표시
  - 성북구 수유토지구획정리지구 제63구의 1,097.8평
- 2. 응모자격
  - 가. 시장법상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 나. 다음 금액을 당시에 예치시킨 자
    - 일금 14,900,000원정 (일천사백구십만원정)
- 3. 응모절차
  - 가. 당시가 지정하는 시장개설허가신청서 및 구매서류와 제2항 나호지

정액을 서울특별시 산업국 상무과 분임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한 그 증명서를 상시에 접수시킬 것

4. 모집마감일 : 1967년 2월 15일까지

5. 기타

가. 응모절차에 관한 상세한사항은 당시 상무과에 사전 문의하여 확오  
없도록 할 것

나. 1967년 2월 20일까지 응모자중 적격자를 응지할것이니 모집에관하  
여는 당시 도시계획국 서무과의 지시를 받을 것

서기 1967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20호

주소 또는 거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18

조선신사 주식회사 의 명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 1966년도 "수시분

1. 납입기한 : 1966년 12월 31일 (고지서 분)

2. 독촉기한 : 1967년 1월 20일 (독촉장 분)

3. 납입장소 : 한국상업은행 본점 및 시금고과 또는 당시 계획국 서무과  
상기 분담금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1966년 12월 5일 및 1967년 1월 14일  
자로 각각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입 기일 및 독촉기일을 1967년 2월 16일로 정해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서기 1967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공시 송달자명 단(고지서)

수납 번호	물 건 지 분담금	납 입 의 무 자	
		주 소	성 명
59	마포구망원동 22~11 452,719	중구남대문로 1가18	朝鮮信社Co.

76	마포구성산동 287~4	385,055	마포구성산동 287~4	金 成 煥
101	▷ 성산동 356~4의 3필	524,016	▷ 노고산동 31~20	尹 泰 權
111	▷ 성산동 298~3	139,194	성북구중앙동 82~32	成 昌 錫
185	▷ 방원동 289~13	325,314	마포구합정동 168	俞 致 順
	5件	1,826,298		
143	서대문구성산동 306~3	92,035	마포구노파동 7	夏 石 愚
166	마포구방원동 255	102,566	▷ 합정동 288	金 納 權
170	▷ 265	445,634	▷ 250	金 庚 鉉
171	▷ 267~4	161,981	▷ 283	金 泰 直
178	▷ 266~8	186,400	▷ 150	金 泰 儀
185	▷ 289~13	325,314	▷ 168	俞 致 順
197	▷ 57~254	18,174	영등포구영등포동 7~13	鄭 金 三
200	▷ 45~2	466,605	마포구합정동 255	李 其 順
208	▷ 256~2	678,961	▷ 용강동 105	李 鉉 讓
211	▷ 266~11의 2필	849,890	▷ 합정동 283	金 容 性
218	▷ 285	270,979	▷ 방원동 141	尹 如 昌
221	▷ 286	324,802	서대문구창천동 25	宋 錫 容
241	▷ 289~5	208,954	마포구합정동 263	林 庚 喜
251	▷ 292~7의 1필	557,848	▷ 282	金 益 俊
254	▷ 283~4	230,157	▷ 16	金 仁 工
256	▷ 283~8	268,276	▷ 255	李 其 順
259	▷ 273	455,235	▷ 255	崔 入 德
262	▷ 248~5	231,089	종로구여수동 70~12	洪 淳 起
277	▷ 293~17	13,327	송구회현동 2가 26	洪 淳 起
290	▷ 234	179,456	마포구합정동 116	南 顯 重
		計: 43件	10,869,850	